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6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3조)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추가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안 제5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여객자동차

(기간) 2022년 7월 11일 ~ 2023년 8월 31일 (2개월)

다.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신설(안 제9조)

: (대상)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여객자동차

(기간) 2023년 7월 11일 ~ 2023년 8월 31일 (2개월)

(방법)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원/m³) - 기준가격(1,330원/m³)}의 50%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824, 3825(팩스 044-201-5582)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